

조세심판원

수신자
(경유)
제 목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

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청구인	성명	대리인	
	상호		
	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		
통 지 내 용	담당 조세심판관(주심)		담당 조세심판관(배석)
	상임	상임	비상임
	청구번호		
	담당(연락처)		
	항변자료	첨부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을 때에는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	
	그 밖의 사항	가. 심판청구인은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74조, 제74조의2 등).	
		나.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원하는 경우, 의견진술이나 심판자료(사건조사서)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출석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의견진술(컨퍼런스콜)을 할 수 있습니다.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58조 등) 다. 의견진술 신청, 심판자료(사건조사서) 사전열람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은 우편, 전송(FAX) 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(www.tt.go.kr)를 통하여 가능합니다. 라. 소액인 심판청구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(「국세기본법」 제78조제1항 단서 등)	

붙임 : 처분청의 답변서 (부분). 끝.

※ 첨부된 답변서는 처분청의 의견이며,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이 아닙니다. 다만, 처분청의 답변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즉시 청구인(또는 대리인)에게 답변서를 송부할 예정이며, 이 경우 답변서에 대한 항변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조 세 심 판 원 장

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)	접수	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	
우	주소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()	전송()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			